

【 11 】 양주군군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5. 9. 5.

제출자 : 양주군수

□ 제안이유

- '95시행 지방세감면조례준칙중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내용이 국회에서 수정 의결되어 수정된 내용을 개정하고
- 중소기업의 공장입지난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의 경감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당초 인구 100만이하 시 및 군 지역은 면제하고 인구 100만 이상 시지역을 50% 과세하던것을 시군 구분없이 전액 면제토록 개정 (안 제6조)
- 중소기업의 공장입지난 해소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당초 5년간을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고 종합토지세 과세시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규정에 불구하고 모두 분리과세토록 개정 (안 제13조)

양주군조례 제 호

양주군군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중 “인구 100만미만 시 및 군 지역에서 과세 기준일 현재”를 “과세기준일현재로”로 한다.

제13조(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 제1항중 “5년간”을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 간”으로 하고, 제1항 단서중 “아니한다”를 “아니하며 제4호의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 대상으로 한다”로 하며, 제1항 제4호중 “제29조의 2의”를 “제29조 제2항의”로 하고 “설치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자”를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자 (분양,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양주군군세감면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제6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경감)——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인구 100만 시 및 군 지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	—— 과세
	기준일 현재 —————

현 행	개 정 안
<p>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p>	
<p>제13조(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제13조(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 ① 최초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아니하며, 제4호의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 과세대상으로 한다.</p>
<p>1. - 3. (생략) 4.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p>	<p>1. - 3. (현행과 같음) 4. 제29조</p>

현 행	기 정 안
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자 및 아파트형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	제2항의 -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자(분양 임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